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1

발의연월일: 2020. 6. 23.

발 의 자: 박덕흠 · 홍준표 · 권성동

홍문표ㆍ이철규ㆍ최승재

コ석기・김예지・金炳旭

최춘식 · 김도읍 의원

(11일)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의 저율과세제도와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20세 이상인 조합원 및 회원 등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으나 2020년 12월 31일에 폐지될 예정임.

농협 등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폐지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농축산물 소비감소, 쌀값 하락, AI·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 인한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농업인·서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제·교육지원 사업 예산의 축소로 이어져 농업용 기자재 무상공급, 상호금융 저금리 대출, 복지사업의 규모 축소를 초래할 것인 바,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농어민·서민 등에 대한 지속적인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의 저율과세 제도 등 농협의 조세특

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 나. 비과세예탁금 및 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 년 12월 31일로 6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 분의 5
- 2. 2028년 1월 1일부터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제89조의3제1항 중 "200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을 "200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2022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세 과세특례) ①-----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 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 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 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 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 한다)의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 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 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 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

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② ~ ⑥ (생 략)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 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 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 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 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중 2020 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 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 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 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26
<u>년</u> 12월 31일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 소득 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 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등: 100분의 5
- 2. 2022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 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 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 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 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u>등: 100분의 5</u>
2. 2028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u>2007년 1월 1일부터 2026년</u>
12월 31일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
월 31일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	
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	
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u>2022년 1월 1일</u> 이후 조합	② 2028년 1월 1일
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